

‘문화중심도시조성위 폐지’ 광주문화수도 어떻게

# “광주 미래 먹구름 끼나” 우려 또 우려

### 재원 조달 등 정부 지원 축소 가능성 지자체·지역 국회의원들 철회나서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폐지 방침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조성위원회 폐지 영향=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는 그동안 청와대의 12개의 국정과제위원회에 포함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자체가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국가사업으로 인식됐다.

또,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 11개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조성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상당한 무게감을 가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조성위원회를 폐지한다면 그동안 유지했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의 위상은 크게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그동안 원할했던 정부 각 부처의 협조 및 지원 체계도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고 소요 재원의 조달 및 사업 추진상황의 점검과 평가도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사업 전반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조성위원회의 폐지의 후폭풍으로 문광부 내의 문화중심도시추진

진기확단 규모도 감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성위원회 폐지 절차=일단 인수위에서는 법령으로 설치된 위원회의 경우, 국회에서의 개정 절차를 밟아 폐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폐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의 개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에 의해 통과된다면 현재의 의석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개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올 4월 총선에서 여대야소가 실현된 이후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성위원회 폐지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신당과 민주당 등에서 ‘영남정권의 호남 죽이기’로 규정하며 정치적 공세에 나설 수 있어 이명박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일단 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성위원회 폐지를 밀어붙이기보다는 존속시키면서 여·야간의 합의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역 여론 반발=인수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폐지 방침에 따라 광주의 미래를 견인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공사가 진행중인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부지 전경.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폐지 방침에 광주지역 여론은 들끓고 있다.

그동안 실용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 배려 정책을 외면했던 인수위가 광주의 최대 핵심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권이라는 점에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소위 ‘호남 푸대접’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면서 사회 통합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인수위의 방침은 대선 과정에서 호남 배려를 약속했던 이명박 당선인의 약속을 파기시키는 행위”라고 반발했으며 전남도 관계자는 “인수위의 이 같은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을 보고 있으면 전남의 현안 사업도 불안해진다고 말했다.”

문화중심도시가 들어설 동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양형일 의원은 “대

선에서 승리하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만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폐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혁신규제개혁팀장을 맡고 있는 박재완 의원은 “특별법을 고쳐서라도 조성위원회는 폐지할 방침”이라며 “조성위원회가 폐지된다면 오히려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변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인수위,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하면

## 지방산단 분양률 감소 투자유치 차질 불보듯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폐지 또는 완화방안은 참여정부가 줄기차게 추진해온 국가균형발전정책에도 크게 배치될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이뤄질 경우 산업단지 분양률 감소, 외자유치 저조, 지역인재 유출 등으로 이어져 광주·전남지역 경제에 적지않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수도권 ‘블랙홀’ 되나=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은 인구의 48.4%, 생산가능인구의 약 60%, 금융과 사회문

제 문제점이 “현재 연평균 30만여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마저 없다면 지방의 공동화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완화 인된다=광주시와 수도권은 “지역경제 발전에 역행하는 규제완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규제완화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지방 형편에 맞는 사업을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

기업·공공기관 수도권 유턴 가능성

“수도권-지방 격차 커져 국가 분열”

화 중추기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설상가상 수도권 공장총량제까지 완화되면 수도권 팽창을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어지게 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한 기업과 공공기관의 수도권 유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광주시와 전남도가 역점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외자와 기업유치는 물론건너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광산업, 부품소재산업, 생물산업 등 주력산업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그간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의 밑바탕에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수도권의 과밀화를 막아야 황폐화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수도권 공장인지 제한 때문에 기업들의 지방행이 늘고 있는 현

경제단체들은 “규제완화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가 더 심해질 경우 동서갈등보다 더 심각한 국가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규제를 현행수준으로 유지하되 지방정부가 지방형편에 맞는 사업을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보조금제도를 포괄보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지역기업에 대한 세제·재정지원 등을 강화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전남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분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내 거점도시간에 산업적 보완관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특히 광주·목포권은 광주권의 중추기능과 목포권의 대외교류기능을 연계·보완해 ‘대중국 전진기지’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 ■ 현재 ‘노대통령 헌소 기각’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명의 다수의 의견으로 노 대통령을 기각했다.

노 대통령이 작년 6월21일 헌법소원을 냈을 때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대통령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느냐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은 헌법기관이지만 기본권의 주체이고,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것으로 풀이됐다.

◇대통령은 헌법소원 낼 수 있나=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을 때’에만 적법한데, 대통령은 공권력 행사의 최고 당사자이고, 문제가 된 발언은 ‘국민 노무현’의 발언이 아닌 ‘대통령 노무현’의 발언이기 때문에 헌법

소원을 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날 결정에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은 기본권의 수범자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언제나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일반 국민으로서 갖는 기본권을 제약받을 때는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중립의무 준수 요청이 공권력 행사인가=선관위의 조치는 따르지 않았을 때 행사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없어 공권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다.

공권력이 아니라면 노 대통령의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된다. 하지만 현재는 선관위의 조치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의2의 ‘경고’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고, 선관위의 조치를 받으면 그 자체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공권력행사로 풀이했다.

◇공직선거법 9조1항의 위헌성=공직선거법 9조1항에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돼있다.

이 조항과 관련해 ‘공무원’이나 ‘부당한 영향력’의 범위 등이 불명확해 조항 자체가 위헌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경위, 수범자의 범위 및 선거과정의 특징 등을 고려했을 때 당사자가 통상의 법감정과 합리적 상식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 중립 의무가 ‘정치적 표현 자유’에 우선

마음과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 산매산복분자교

산매 (Sanmae) brand products advertisement featuring various bottles and packaging designs.